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재다300287 사해행위취소

원고(재심피고) A조합

소송대리인 나양명, 최건아

소송복대리인 강상국

피고(재심원고) 1. B

2. 주식회사 C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1. 3. 25. 자 2020다27853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8.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 278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재심원고)들이 그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배척하며 원심결론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그 판단의 내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